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60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윤상현 · 고동진 · 박덕흠
조지연 · 천하람 · 김용태
곽규택 · 이현승 · 임종득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 간 이해관계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원과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 동조합은 기획예산처 또는 사 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 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 다)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임원과 혈족·인척 등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u> <u>있는 직원의 현황(해당 임원</u> <u>과의 관계, 직위, 담당 업무에</u> <u>관한 사항을 포함한다)</u>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